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록

- ▣ 일 시 : 2012. 8. 24.(금), 14:00
-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202호 회의실
- ▣ 출석위원 : 지건길, 이광춘, 최정필, 박강철,  
신경철, 양재삼, 최성락, 최성자,  
조현종, 김권구 (이상 10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 목 차

## 【심의사항】

1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예정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2	경산 지식산업지구 실시계획수립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3	예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4	파주 덕진산성 학술 발굴(시굴)	공개
5	강진 월남사지 발굴	공개
6	하남 교산동 265-13번지 근린생활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	공개
7	남원 옥과-적성 도로확장구간 내 발굴	공개
8	강진 환경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발굴	공개
9	서울 중구 장충동1가 96-1번지 썬앳푸드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0	김해 봉황동 178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1	밀양역-삼랑 국도개설구간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공개

## 【검토사항】

1	서울 종로 청진구역 제5지구 내 유적 보존방안 변경(안) 검토	공개
2	부여 쌍북리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등 발굴조사 결과 재검토	공개
3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발굴(시굴)조사 결과 재검토	공개
4	울산 울주군 대대리 144-4 · 5번지 공장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 결과 검토	공개

## 【보고사항】

1	울산 우정혁신도시 개발사업부지 내 제방유구 보존방안 보고	공개
---	---------------------------------	----

2	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심사 소위원회(제4차)회의 결과 보고	공개
3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발굴허가 현황 보고	공개

## 1.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예정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 가. 제안사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예정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2012. 7. 25.)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을 심의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62~1865-5 북측 해상 일원
- 사업면적 : 해상(4,221,000m<sup>2</sup>)
- 사업내용 :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사업
- 시행자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 (2) 조사내용

- 조사기관 : (재)영해문화유산연구원
- 조사단 구성
  - 조사단장 : 김경철(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박광석(동 연구원 부원장)
- 조사기간 및 면적 : 2012. 5. 30. ~ 2012. 7. 25. / 4,221,000m<sup>2</sup>

#### (3) 조사결과 및 의견

- 수중 조사지역은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62~1865-5 북측 일원 해상이며, 수중정밀 장비탐사 및 잠수조사 결과 확인된 이상체는 총 7개소(폐그물 2개소, 폐양카 2개소, 폐말목 2개소, 폐드럼통 1개소)였으며, 이 중 문화재와 관련된 이상체는 확인되지 않음.
- 사업대상지역에서 유적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을 시행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라. 검토의견**

-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유적 등의 존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기에 별도의 보존 조치는 불필요함.
-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우리 청에 신고토록 조치.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 찬성 10명 / 출석 10명

## 2. 경산 지식산업지구 실시계획수립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 가. 제안사항

경산지식산업개발(주)에서 추진 중인 경산 지식산업지구 실시계획수립 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산 지식산업지구 실시계획수립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2012. 6. 27.)에 따라, 문화유적 보존대책 등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사업개요

- 사업명 : 경산 지식산업지구 실시계획수립
-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와촌면 일원
- 사업면적 : 3,916,666㎡
- 사업내용 : 산업지구 조성
- 시행자 : 경산지식산업개발(주)

#### (2) 조사내용

- 조사기관 : (재)세종문화재연구원
- 조사단 구성
  - 조사단장 : 김창억(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박달석(동 연구원 조사과장) - 고고·역사  
구경모(부산외국어대학교 HK연구교수) - 사회·민속
- 조사면적 : 3,916,666㎡
- 조사기간 : 2012. 5. 31.~2012. 6. 27.
- 조사내용 : 고분군 11개소, 지식묘군 1개소, 유물산포지 13개소, 고묘군 7개소, 고묘 4개소(9기)

#### (3) 조사결과

- 고분군 11개소, 지식묘군 1개소, 유물산포지 8개소(시굴조사)
- 유물산포지 3개소(시굴조사 및 표본조사)
- 유물산포지 2개소(표본조사)
- 고묘군 7개소 및 고묘 4개소(9기) 무연고 묘에 해당될 경우 입회조사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유적 번호	유 적 명	행정구역	시대	면적 (㎡)	조사단 견해	비고
1	경산 소월리 고분군Ⅱ	경산 와촌면 소월리	삼국	11,430	시굴조사	
2	경산 소월리 고분군Ⅲ	경산 와촌면 소월리	삼국	23,330	"	
3	경산 소월리 고분군Ⅳ	경산 와촌면 소월리	삼국	22,880	"	
4	경산 소월리 고분군Ⅴ	경산 와촌면 소월리	삼국	13,820	"	
5	경산 소월리 고분군Ⅵ	경산 와촌면 소월리	삼국	4,040	"	
6	경산 소월리 고분군Ⅶ	경산 와촌면 소월리	삼국	11,820	"	
7	경산 소월리 고분군Ⅷ	경산 와촌면 소월리	삼국	7,190	"	
8	경산 대학리 고분군Ⅰ	경산 하양읍 대학리	삼국	24,050	"	
9	경산 대학리 고분군Ⅱ	경산 하양읍 대학리	삼국	6,030	"	
10	경산 대학리 고분군Ⅲ	경산 하양읍 대학리	삼국	8,245	"	
11	경산 한사리 고분	경산 하양읍 한사리	삼국	4,820	"	
12	경산 대학리 지석묘군	경산 하양읍 대학리	청동기	24,650	"	
13	경산 소월리 유물산포지Ⅰ	경산 와촌면 소월리	삼국~조선	36,870	"	
14	경산 소월리 유물산포지Ⅱ	경산 와촌면 소월리	삼국~조선	41,350	표본조사	
15	경산 소월리 유물산포지Ⅲ	경산 와촌면 소월리	삼국~조선	25,110	시굴조사	
				40,170	표본조사	
16	경산 소월리 유물산포지Ⅳ	경산 와촌면 소월리	삼국~조선	5,580	시굴조사	
				21,180	표본조사	
17	경산 소월리 유물산포지Ⅴ	경산 와촌면 소월리	삼국~조선	10,620	시굴조사	
				40,950	표본조사	
18	경산 소월리 유물산포지	경산 와촌면 소월리	삼국~조선	16,490	시굴조사	
19	경산 소월리 유물산포지Ⅵ	경산 와촌면 소월리	통신~조선	2,800	"	
20	경산 소월리 유물산포지Ⅶ	경산 와촌면 소월리	삼국	16,520	"	
21	경산 대학리 유물산포지Ⅰ	경산 하양읍 대학리	청동기~삼국	46,865	"	
22	경산 대학리 유물산포지	경산 하양읍 대학리	청동기~삼국	20,520	"	
23	경산 대학리 유물산포지Ⅱ	경산 하양읍 대학리				
24	경산 대학리 유물산포지Ⅲ	경산 하양읍 대학리	삼국~조선	16,110	"	
25	경산 교리 유물산포지	경산 하양읍 교리	고려~조선	59,860	표본조사	
26	경산 대학리 고묘군Ⅰ	경산 하양읍 대학리	고려~조선	10,185	입회조사	
27	경산 대학리 고묘군Ⅱ	경산 하양읍 대학리	고려~조선	5,430	"	
28	경산 대학리 고묘군Ⅲ	경산 하양읍 대학리	고려~조선	3,180	"	
29	경산 대학리 고묘군Ⅳ	경산 하양읍 대학리	고려~조선	1,485	"	
30	경산 대학리 고묘군Ⅴ	경산 하양읍 대학리	고려~조선	2,175	"	
31	경산 덕촌리 고묘군Ⅰ	경산 와촌면 덕촌리	고려~조선	3,465	"	
32	경산 덕촌리 고묘군Ⅱ	경산 와촌면 덕촌리	고려~조선	2,810	"	
33	경산 대학리 고묘Ⅰ(2기)	경산 하양읍 대학리	고려~조선	200	"	
34	경산 대학리 고묘Ⅱ(2기)	경산 하양읍 대학리	고려~조선	200	"	
35	경산 대학리 고묘Ⅲ(4기)	경산 하양읍 대학리	고려~조선	400	"	
36	경산 대학리 고묘Ⅳ(1기)	경산 하양읍 대학리	고려~조선	100	"	

◆ 주변지역의 지정 문화유적 현황

번호	지정 구분	지정 명칭	소재지	성격	이격거리
1	도 문화재자료 제107호	하양향교	경산 하양읍 교리 158	향교	3m

라. 검토의견

-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지정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 현상변경 등의 관련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
-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조사기관 의견대로 하되, 경산 대학리 고묘군·덕촌리 고묘군 등의 유존 지역에 대해서는 무연고묘 확인 절차를 거쳐 표본(시굴)조사를 실시토록 함.
- 찬성 10명 / 출석 10명

### 3. 예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문화재 지표조사

#### 가. 제안사항

예천군에서 추진 중인 예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예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2012. 3. 23.)에 따라, 문화유적 보존대책 등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사업개요

- 사업명 : 예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일원
  - 예천하수처리시설(대심 · 중앙 · 백전 · 우계 · 동본 · 남본 6개 처리분구)
- 사업면적 : 3,172,200m<sup>2</sup>
- 사업내용 : 하수관거정비
- 시행자 : 예천군

##### (2) 조사내용

- 조사기관 :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 조사단 구성
  - 조사단장 : 박화순(동 대학교 중앙박물관장)
  - 책임조사원 : 이희돈(동 대학교 중앙박물관 학예실장)
- 조사면적 : 941,540m<sup>2</sup>
- 조사기간 : 2011. 12. 19. ~ 2012. 3. 23.
- 조사내용 : 남본리 개심사지 등 7개소

##### (3) 조사결과

- 남본리 개심사지 1개소(시굴조사)
- 동본리 유물산포지 등 3개소(표본조사)
- 노상리 동헌지 등 2개소(입회조사)
- 청북리 동제유적(井) 1개소에 대하여 주민 입회하에 공사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번호	유적명	분구	이격거리 (m)	면적 (㎡)	조사단의견	비 고
1	남본리 개심사지	남본처리분구	0	846	시굴조사	
2	청복리 동제유적(井)	"	0~5	0	주의유적 (주민입회)	
3	동본리 유물산포지	동본처리분구	0~20	496	표본조사	
4	동본동 삼층석탑	중앙처리분구	30	722	"	보물 제426호
5	동본동 석조여래입상	"	30		"	보물 제427호
6	노상리 동헌지	"	6	168	입회조사	
7	대심리 고분군2	대심처리분구	16~36	464	"	

◆ 주변지역의 지정 문화유적 현황

번호	지정 구분	지정 명칭	소 재 지	성격	이격거리
1	보물 제53호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예천 예천읍 남본리 200-3	탑	62m
2	도 문화재자료 제146호	동악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예천 예천읍 동본리 171-1	불상	270m
3	도 문화재자료 제410호	예천읍사무소	예천 예천읍 효자로 89	건물(행정)	24m
4	보물 제426호	예천 동본동 삼층석탑	예천 예천읍 동본리 474-4	탑	30m
5	보물 제427호	예천 동본동 석조여래입상	예천 예천읍 동본리 474-4	불상	30m
6	도 문화재자료 제138호	예천향교	예천 예천읍 백전리 199-1	향교	10m
7	도 문화재자료 제144호	흑응산성	예천 예천읍 서본리 산14	성곽	286m

라. 검토의견

-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지정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 현상변경 등의 관련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
-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 단, 청복리 동제유적(井)에 대하여는 소유자(관리자)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적정 처리토록 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검토 의견대로 조치

○ 찬성 10명 / 출석 10명

#### 4. 파주 덕진산성 학술 발굴(시굴)

##### 가. 제안사항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시도기념물 제218호 파주덕진산성 학술 발굴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파주시에서는 덕진산성 내부에 DMZ 생태관광 탐방로 설치와 함께 유적의 보존을 위한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유적의 성격과 규모 구조를 파악하고자 시굴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파주시장
- (2) 발굴 대상지역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산13번지 일원
- (3) 조사 대상면적 : 총2,656㎡(시굴 : 1,856㎡, 발굴 : 800㎡)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27일
- (5) 발굴기관 : (재)중부고고학연구소
  - 조사 단장 : 김무중(동 연구소장)
  - 책임조사원 : 김권중(동 연구소 조사연구실장)

##### 라. 참고사항

- 발굴비용 : 127,327천원(신청인 부담)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하며, 발굴조사 종료 후 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찬성 10명 / 출석 10명

## 5. 강진 월남사지 발굴

### 가. 제안사항

강진군에서 추진하는 전남 강진군 소재 기념물 제125호 월남사지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월남사지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건물지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정비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것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진군
- (2) 발굴 대상지역 :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4,656㎡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 (5) 발굴기관 :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 조사 단장 : 김기홍(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한성욱(동 연구원 부원장)

### 라. 참고사항

- 발굴비용 : 236,000천원(신청인 부담)
- 시굴조사
  - 기관 :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 기간 : 2011. 12. 30.~2012. 2. 15.
  - 결과 : 건물지 확인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하며, 유적에 대한 장기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함.
- 찬성 10명 / 출석 10명

## 6. 하남 교산동 265-13번지 근린생활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

### 가. 제안사항

김영숙이 추진하는 하남시 교산동 263-15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매장 문화재 발굴(시굴)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동 건은 발굴조사 담당기관(하남문화재단 역사박물관)이 기관 설립 후, 첫 발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조사기관의 발굴조사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다. 발굴신청개요

- (1) 신청인 : 김영숙
- (2) 발굴 대상지역 :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265-13번지
- (3) 발굴 대상면적 : 545m<sup>2</sup>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4일
- (5) 발굴기관 : 하남문화재단 역사박물관
  - 조사 단장 : 김세민(동 박물관장)
  - 책임조사원 : 김현준(동 박물관 연구원)

### 라. 참고사항

- 발굴비용 : 13,260천원(신청인 부담)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함.
- 찬성 10명 / 출석 10명

## 7. 남원 옥과-적성 도로확장구간 내 발굴

### 가. 제안사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전북 남원시 소재 옥과-적성 도로확장구간 내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내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구석기시대 고토양층, 청동기시대 분묘, 삼국시대 수혈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정확한 성격규명 및 향후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것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2) 발굴 대상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19,848m<sup>2</sup>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234일
- (5) 발굴기관 :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 조사 단장 : 김미란(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김진(동 연구원 기획연구실장)

### 라. 참고사항

- 발굴비용 : 1,263,000천원(신청인 부담)
- 시굴조사
  - 기 관 :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 기 간 : 2011. 3. 22.~2011. 4. 23.
  - 결 과 : 구석기시대 고토양층, 청동기시대 분묘, 삼국시대 수혈 등 확인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조사를 허가함.
- 찬성 10명 / 출석 10명

## 8. 강진 환경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발굴

### 가. 제안사항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전남 강진군 소재 강진 환경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발굴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내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 주거지, 수혈, 조선시대 건물지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정확한 성격규명 및 향후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것임.
- 동 건물은 본위원회 제7차 회의(2012. 7. 27.)시 조사기관 변경에 따른 사유를 제출받아 재심의토록 보류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남개발공사
- (2) 발굴 대상지역 :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58,210m<sup>2</sup>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185일
- (5) 발굴기관 : (재)해동문화재연구원
  - 조사 단장 : 이 현(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김강옥(동 연구원 조사부장)

### 라. 참고사항

- 발굴비용 : 1,150,394천원(신청인 부담)
- 시굴조사
  - 기관 :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기간 : 2011. 8. 4.~2012. 5. 25.
  - 결과 : 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 주거지, 수혈, 조선시대 건물지 등 확인

#### 마. 사업시행자 의견

- 최초 사업 추진시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은 (재)마한문화재연구원으로 민간회사의 사업포기로 인한 사업시행자 변경(전남개발공사) 과정에서 시굴조사 용역 발주 검토 시 우리공사 사규 “회계규정 제9장 계약 제161조(관계법의 준용)”에 의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재)고려문화재연구원으로 조사기관이 선정
  
- 시굴조사에서 발굴조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고려문화재연구원의 내부사정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통보에 따라 계약관련 법규를 검토 후, 공정성 및 투명성을 우선 해야 하는 점을 고려,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함에 따라 부득이 발굴조사 기관이 (재)해동문화재연구원으로 변경

#### ※ 관련 회계규정

- 『공사 회계규정 제9장 계약 제16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 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 수의계약 / 지역제한 대상 : 5천만원 이하 / 3억8천만원 이하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하며, 조사 자료 인계인수를 철저히 할 것.
- 찬성 10명 / 출석 10명

## 9. 서울 중구 장충동1가 96-1번지 썬앳푸드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 가. 제안사항

서울 중구 장충동1가 96-1번지 썬앳푸드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중구 장충동1가 96-1번지 썬앳푸드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2. 7. 26.)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매장문화재 평가회의를 실시(2012. 7. 26.)하고,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주)썬앳푸드
- (2) 발굴장소 및 면적 :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96-1번지 일원 / 618.2㎡
- (3) 발굴기관 : (재)중앙문화재연구원
  - 조사 단장 : 조상기(동 연구원 단장)
  - 책임조사원 : 이재돈(동 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 (4) 발굴기간 : 2012. 7. 17.~2012. 7. 18.(실조사일수 : 2일)
- (5) 조사결과 : 조선시대 한양도성 기저부

### 라. 전문가 검토회의 의견(2012. 7. 26. / ○○○, ○○○, ○○○, ○○○)

- 유구는 남아있는 부분이 적으나 지형은 원형대로 잘 남아 있음
- 한양도성 성벽 통과선이 확인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발굴조사는 필요치 않음
- 보존필요
- 도성의 동남측 성벽선이 분명히 확인되어 보존대책을 마련함이 좋겠음

###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2. 7. 26. / ○○○, ○○○, ○○○, ○○○)

- 평가 평점 : 91.38점(※ 기준 평점 : 현지보존 74.31점, 이전복원 63.92점)

○ 평가 의견

- 조사결과 풍화암반층을 굴착하고 체성 지대석받침이 확인되어, 한양도성 멸실구간의 통과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
- 국가사적으로 확대지정하는 것이 필요함
- 지대석 뒤채움 등이 나오는 등 서울성곽 위치선이 분명한 지역으로 보존을 통해 성벽회복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임
- 조사된 유구 양상이 분명하므로 보존가치는 충분하며, 향후 서울성곽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대책 수립이 필요함

바. 사업시행자 의견(2012. 8. 20. / (주)썬앳푸드)

- 1안 : 발견된 성곽 기초부 잔존석 중 A지역에 위치한 잔존석을 B지역으로 이전하여 하나의 공간에 보존·전시하고, 건축선은 주도로에서 5.5m 후퇴하여 건축
- 2안 : A지역에 위치한 잔존석을 그대로 보존
  - 1층부의 건축선을 A지역 잔존석에서 사방으로 2m씩 이격하여 건축하고, 2층 이상부에서의 건축선은 1층부보다 주도로 쪽으로 1m 더 넓게 하여 서울성곽 연결선 구간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건축물의 공간 활용도를 높임
- 3안 : 제1안과 동일하게 이전하되, 2층 이상부에서의 건축선은 1층부보다 주도로 쪽으로 1m 더 넓게 하여 서울성곽 연결선 구간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건축물의 공간 활용도를 높임

사. 지방자치단체(서울시)의견(2012. 8. 22.)

- 발굴유구 보존 및 토지매입
  - 신당동~장충동 일대는 성곽 유존이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어 왔던 지역이며 서울시에서도 2009년 학술용역을 통해 장기계획에 의거 국비지원에 의한 토지매입 계획 수립(서울성곽 중중기 종합정비 기본계획 2009)
  - 장충동 96-1번지는 노출된 유구의 원형보존을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해 우선하여 국비투입 매입 요구(매입 후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
- 유사사례 재발방지(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한양도성 유존구간 표시)
  - 문화재청장 현상변경 허가사항이라는 점이 건축 행위 허가에 뒤늦게 확인되고 있어 토지매수자의 개발계획 수립에 제동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문화재청장 사전 검토대상지역임을 표시하여 개발계획 수립시 참고토록 제도화

- 서울시에서(2012. 6. 27.) 국토해양부 및 문화재청에 위 사항을 요구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새로운 규제 신설로 인지하고 있고, 중앙부서인 문화재청의 검토의견과 토지이용규제심의회이 이행필요(국토해양부 회신 : 2012. 7. 13.)
-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검토
  -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2009)연구용역 결과 한양도성 기저부로부터 내부 10m까지는 문화재구역으로 설정
  - 문화재구역선에서 내외 20m를 보호구역으로 설정예정
  - 문화재구역 예정 국유지에 대해 문화재청으로 관리권 이전을 요청하여 자산매각에 따른 시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기획재정부에 해당지번 통보)

#### 아.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대로 조치
- 찬성 10명 / 출석 10명

## 10. 김해 봉황동 178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 가. 제안사항

김해시 봉황동 178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유적 발(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훈토파총, 조선시대 수혈 등)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2. 8. 14.)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평가회의를 실시(2012. 8. 14.)하여 원형보존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해당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전영숙
- (2) 발굴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178번지
- (3) 발굴기관
  -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 조사 단장 : 박종섭(동 재단 조사연구실장)
    - 책임조사원 : 노재민(동 재단 조사연구실 남부조사팀장)
- (4) 발굴기간 및 면적 : 2012. 8. 1.~2012. 8. 2. (실조사일수 2일) / 177m<sup>2</sup>
- (5) 조사결과
  - 훈토파총, 조선시대 수혈, 구상유구 등 10기 유구 확인

### 라. 추진경과

- (1) 전문가 검토회의(2012. 8. 14. / ○○○, ○○○, ○○○)
  - 현재 상태에서 유구가 훼손되지 않게 보존조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사적인 봉황동유적(회현리파총)에 인접해 있고,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의 밀도 등으로 보아 향후 개발을 지양하고 장기적 보존대책에 포함하여 보존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매장문화재 평가회의(2012. 8. 14. / ○○○, ○○○, ○○○)

○ 평가 평점 : 82.45점 (원형보존 기준평점 이상)

○ 평가 의견

- 사적 2호의 봉황동 유적과 연계되는 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음.
- 주요 사적지인 김해 봉황동 유적(회현리 패총)과 연접해 있으며, 유구의 밀도 및 중층적 층위 구조로 보아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주변에 봉황동 유적(회현리 패총) 등이 분포하고 인근에서 고읍성 등 유구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종합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함.

※ 기준 평점 : 현지보존 74.31점, 이전복원 63.92점

마. 사업시행자 의견

- 결혼한 지 16년 만에 대출을 하여 어렵사리 땅을 장만하였는데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니 남편과 가족에게 미안함으로 고개를 들 수 없음.
- 땅이 묶여버리면, 언제 보상이 나올지 보상을 받아도 많은 손해를 보고 팔 수 밖에 없음. 그렇게 되면 대출이자도 내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됨. 가족의 조그마한 보금자리지만 잃지 않고 살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도와주시기 바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대로 조치

○ 찬성 10명 / 출석 10명

## 11. 밀양역-삼랑 국도개설구간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 가. 제안사항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일원 밀양역-삼랑 국도개설구간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재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제철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 회의(2012. 3. 30.) 및 평가회의를 실시하여 이전복원 의견이 제시되었음.
- 동 유적에 대한 본 위원회 제4차 회의(2012. 4. 27.) 및 현지조사(2012. 5. 16.), 제5차 회의(2012. 5. 25.), 제6차 회의(2012. 6. 22.) 및 현지조사(2012. 7. 20.)를 실시하고 제시된 보존방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재설계안을 제출한 바, 해당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보존유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임.

###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2) 발굴장소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일원
- (3) 발굴기관
  - (재)두류문화연구원(A·B구간)
    - 조사 단장 : 최현섭(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김용탁(동 연구원 조사연구부장)
  - (재)삼강문화재연구원(C·D구간)
    - 조사 단장 : 최종규(동 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조현정(동 연구원 조사과장대우)
- (4) 발굴기간 및 면적
  - 두류 : 2012. 1. 5.~2012. 8. 14. (실조사일수 130일) / 13,749m<sup>2</sup>
  - 삼강 : 2012. 1. 16.~2012. 5. 4. (실조사일수 60일) / 5,890m<sup>2</sup>
- (5) 조사결과
  - 삼국시대 고분, 제철로, 폐기장, 점토저장시설, 수혈 유구, 탄요,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등 확인
  - 슬래그, 노벽, 송풍관, 용범 등 출토

## 라. 현지조사 및 사업시행자 설계안

### (1) 현지조사(2012. 7. 20. / ○○○, ○○○)

- 새로 제시된 (1)안과 (3)안중 (3)안은 복토를 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어서 원지형을 현저하게 변경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일부 유구를 이전 복원하는 것이어서, 현지 보존에 위배되어 바람직하지 않음.
- 교량을 설치하여 현지 보존하는 (1)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바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어서 (1)안을 중심으로 보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1)안을 중심으로 보존방안을 마련할 시 유적의 유구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단과 유기적 협력·상의를 할 필요가 있음.

### (2) 사업시행자 설계안(2012. 8. 2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1안·2안 비교 제출하며 1안은 교량설치로 2안은 일부유구 이전·복원하는 안임.
  - 1안중에서 1-1안은 출토유구-모래성토-흙성토-잔디식재 후 표지석 설치,
  - 1-2안은 출토유구-모래성토-흙성토-잔디식재 후 복제유구 노출 방안임.

## 바. 추진경과

### (1) 전문가 검토회의(2012. 3. 30. / ○○○, ○○○, ○○○)

- 조사에서 밝혀진 유구 가운데 중요유구를 선정하여 이전방안 검토할 것.
- 현 도로부분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하여 조사할 것.
- 성토 구간의 조사지역 유구는 훼손하지 않고 성토할 것.
- 이전복원 유구 결정후 D지구에 대한 부분공사 시행할 것.

### (2) 매장문화재 평가회의(2012. 3. 30. / ○○○, ○○○, ○○○)

- 평가 평점 : 84.95점 (원형보존 기준평점 이상)
- 평가 의견
  - 한국고대 철생산유적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철생산 전 공정을 보여주는 유적임. 중요유구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전검토가 요구됨.
- ※ 기준 평점 : 현지보존 74.31점, 이전복원 63.92점

### (3) 문화재위원회 심의(제4차, 2012. 4. 27.) : 현지조사 실시

### (4) 현지조사(2012. 5. 16. / ○○○, ○○○, ○○○)

- 중심연대가 6~7C로 판단되는 제출유적이 확인되었음.

- 동 유적에서는 제련로, 정연로, 단야, 탄요, 용범, 점토저장시설, 폐기장 등 고대 제철의 여러 과정과 관련된 유구 및 유물이 종합적으로 확인되어 고대 철 생산기술을 밝히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적으로 판단됨.
- 경주 황성동 제철유적, 밀양 사촌리 제철유적 등은 제철 생산의 일부 과정만을 보여주는 데 비하여, 동 유적은 제철 생산의 전 공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희귀한 사례로 판단됨.
- 특히, 동 유적은 밀양강이 인근에 흐르는 곳에 입지하고 있어 하천을 통한 제철의 수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유적이 입지한 장소의 역사성, 현장성도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됨.
- 결론적으로, 동 유적을 현지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문화재위원회 심의(제5차, 2012. 5. 25.) : 구체적인 보존방안 자료 보완

(6) 문화재위원회 심의(제6차, 2012. 6. 22.) : 유적이 분리되지 않도록 재설계

#### 사. 참고사항(사업시행자 의견 경과)

-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제4차 회의(2012. 4. 27. / 검토회의 결과 이전복원 의견)
  - 밀양시립박물관과 협의하여 양호한 6기를 이전복원하도록 하겠음.
  - 기존 도로는 성토되는 구간으로 발굴을 제외하는 것을 건의함.
-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제5차 회의(2012. 5. 25. / 현지조사 결과 현지보존 의견)
  - 유구를 현장에 보존할 경우 시공중인 노선(국도58호) 변경이 불가피함. 노선변경은 추가비용 발생과 기 시공분 매물로 어려움이 있음.
  - 추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사업성(경제성)이 나빠져 사업추진이 불투명
  - 터널구간을 제외하고 도로공사 전구간이 문화재 조사구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추가편입 토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필요함.
  - 따라서 국가기반시설인 도로확충과 문화재 보호를 아우르는 이전복원(접근성과 관람이 용이한 밀양시립박물관 또는 국립박물관 등)을 건의함.
-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제6차 회의(2012. 5. 22. / 자료 보완후 재 심의)
  - 도로 선형과 종단계획을 변경 검토하였음.
  - 도로계획고를 상향조정하여 발굴유구 복토(1m모래비다짐 + 2m토사) 후 현지보존
  - 중요유구 6기를 2개구역으로 분리(5기는 중앙녹지대, 1기는 옹벽구조 설치)하여 보존
  - 보존구역 울타리 및 안내간판 설치.
  - 향후 접근성, 사후관리 곤란 및 종단선형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빈번 예상, 집단 민원 제기 우려, 터널부 S커브 발생으로 주행 및 시공성 불리 등의 문제점이 있음.

**아.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사업시행자 의견 1-1안으로 하되, 1~2개 유구는 복원하여 전시토록 함.

○ 찬성 10명 / 출석 10명

## II. 검토사항

### 1. 서울 종로 청진구역 제5지구 내 유적 보존방안 변경(안) 검토

####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 청진구역 제5지구 내 유적 보존방안 변경(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건물지 등 주요 유구가 확인되어 본 위원회 2010년 제2차 회의(2010. 2. 26.)시 유구의 보존방안에 대해 의결한 바 있으나,
- 사업시행자가 [(주) 코람코자산신탁]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유적보존 방안을 일부 수정 제출(2012. 8. 16.)함에 따라 변경한 유적 보존방안에 대하여 재검토하고자 함.

####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 청 인 : (주)코람코자산신탁 [구 (주)동림도시개발]
- (2) 발굴장소 및 면적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88번지 일원 / 2,400m<sup>2</sup>
- (3) 발굴기관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 (4) 발굴기간 : 2009. 8. 18.~2010. 2. 22.(실조사일수 : 83일)
- (5) 조사결과 : 조선시대 시대별 문화층(16~20세기) 등

#### 라. 그 동안의 경과

- 1차 지도위원회(2009. 10. 8. / ○○○, ○○○, ○○○, ○○○, ○○○)
  - 근·현대에서 일제강점기 및 조선시대 말기의 문화층에 대해 하강조사를 실시.
  - 서울 4대문안 조선시대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 2차 지도위원회(2009. 11. 11. / ○○○, ○○○, ○○○, ○○○, ○○○, ○○○)
  - 층위별 유구를 표현하고 입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
  - 부분적으로 조사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조사.
  - 조사 후 중요 유구가 확인될 경우에는 보존여부 등을 결정.

- 3차 지도위원회(2009. 12. 18. / ○○○, ○○○, ○○○, ○○○, ○○○)
  - 확인된 유구는 조선시대 관청 건물지와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높음.
  - 15세기 유구층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하강조사가 필요.
  - 보존에 대한 결정은 문화재청 등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
- 관련전문가 현지조사(2010. 1. 7. / ○○○, ○○○, ○○○, ○○○)
  - 하층유구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
  - 하층유구(V층이하)에 대한 발굴조사는 IV층까지의 조사유구 가운데 보존이 필요한 유구(명기 출토유구, 목판 온돌유구)는 조사단의 의견을 받아 3D스캔과 전사(보존처리)를 한 후 V층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V층에서 중요 유구가 확인될 때에는 재논의 하도록 함.(○○○, ○○○)
  - 각 층위별 문화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백자명기 출토지에 대한 해석과 목판재결구 등도 적극적인 접근이 요청되며, 석축의 시기별 축성의 특성, 범위의 연속 근거에 대해서도 세밀한 조사가 요청됨. IV층에 위치한 중요유구(188·194·199번지 등)는 현지보존하고 타부분은 상부석재 등을 안전하게 이동하고. 하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함. (동영상 촬영 및 실측요함/ ○○○)
- 4차 지도위원회(2010. 2. 9. / ○○○, ○○○, ○○○, ○○○, ○○○, ○○○)
  - 188번지 탄화마루, 194번지 온돌과 상부마루, 187번지 추정 공방지 유구는 단편적인 유구이나 조선 전기의 중요한 유구임.
  - 상기 유구들은 이전 보존하고 하강조사를 실시토록 하며, 신축 건물 내 전시관 또는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토층전사와 함께 전시토록 함.
- 5차 지도위원회(2010. 2. 24. / ○○○, ○○○)
  - 187번지 'ㄱ'자 형태의 추정 공방시설, 188번지 탄화마루, 194번지 온돌구조 등은 토층전사를 떠서 이전 및 원위치 복원토록 함.
-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제1차 회의결과(2010. 1. 22.)**
  - 조사유구 중 보존이 필요한 유구(188, 194, 199번지)는 3D-스캔과 전사(보존처리)한 후 하층유구를 조사토록 함.
- **사업시행자 유구 보존방안 제출(2010. 2. 25.)**
  - 1안)지하 1층 로비 전시
  - 2안)지하연결통로 내부전시
  - 3안)지하2층 전시공간 마련 별도 전시
-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제1차 회의결과(2010. 2. 26.)**
  - 중요유구는 이전복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서울시 청진지구 개발계획의 지하통로와 연계하여 복원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함.  
[사업시행자 제출한 유구 보존방안 2(안)]

마. 사업시행자 보존방안 변경안(2012. 5. 16.)

- 유구 전시위치 변경 : 지하2층 연결통로(기존)→지하2층 별도 건물내 전시실(변경)
- ※ 변경사유 : 시행사 변경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시 누락 및 지하 연결통로 설치 계획이 설계도서에 미반영된 채 구조체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당초 계획이행이 곤란하여, 별도의 전시공간 마련, 보존조치를 이행코자 함.

바. 지방자치단체(종로구)의견(2012. 5. 16.)

- 전시공간이 공공용지에서 사업건물 내로 변경될 경우 관람객을 위한 안내시설 및 전시실 운영방안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 의결사항

- 보류
  - 추후 재검토
- 찬성 10명 / 출석 10명

## 2. 부여 쌍북리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등 발굴조사 결과 재검토

### 가. 제안사항

부여 쌍북리 154-10번지 내 유적 등에 대한 조사기관(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의 발굴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발굴조사기관(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부여 쌍북리 주택신축부지 : 조사 미완료 상태에서 완료신고서 제출.
  - 충남도청신도시 연결도로부지 : 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정밀발굴조사 실시.
- 동 건은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2012. 7. 27.)결과, “소위원회 구성하여 검토한 후 재검토”토록 심의된 사항임.

### 다. 발굴조사 개요

#### (1) 부여 쌍북리 154-10번지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 사업시행자 / 사업면적 : 박정호(개인) / 2,343m<sup>2</sup>
- 시굴조사 : (재)동방문화재연구원
- 발굴조사 :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 조사 단장 : 임효재(동 연구원 조사단장)
  - 책임조사원 : 김성남(동 연구원 책임연구원)
  - 발굴허가 : 2012. 5. 8.
  - 조사일수 / 면적 : 16일(실조사일수) / 1,640m<sup>2</sup>
-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제출(2012. 6. 19.)
  - 반려조치 : 2012. 6. 21.(반려사유 : 발굴조사 미완료)
- 전문가 검토회의(2012. 6. 27. / ○○○, ○○○, ○○○)
  - 사비기시 백제의 저수지, 수로, 공방터, 우물 등 5차례에 걸쳐 조성된 중요한 유적임.
  - 발굴조사가 미완료된 상태이므로, 추가 조사 후 검토가 요망됨.
  - 조사기관은 행정적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 발굴변경허가 : 2012. 7. 6.(1,640m<sup>2</sup> / 실조사일수 9일)

(2) 충청남도청신도시 연결도로 확장구간내 유적

-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 발굴조사 :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 조사 단장 : 임호재(동 연구원 조사단장)
  - 책임조사원 : 김성남(동 연구원 책임연구원)
  - 발굴허가 : 2011. 10. 20.
  - 조사일수 / 면적 : 7일(실조사일수) / 5,089m<sup>2</sup>
- 부분완료 조치 : 2011. 11. 24.
  - 부분완료 : 4,075m<sup>2</sup>
  - 석곽묘 등 확인 지역(1,014m<sup>2</sup>) 발굴조사 필요.
-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제출(2012. 7. 2.)
  - 반려조치 : 2012. 7. 6.(반려 사유 : 동 정밀발굴조사 건에 대한 허가사항 없음)

라. 소위원회 및 문화재청 조치사항

(1) 소위원회(2012. 8. 9.)

- 참석자 : ○○○, ○○○, ○○○, ○○○, ○○○, ○○○
- 회의결과 : 조건부 가결
  -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세부적인 부분은 청에서 확인하여 시행토록 함.

(2) 문화재청 조치사항(2012. 8. 22.)

- 조사기관 : 경고 조치
  - 조사기관 관련자 : 일정기간 조사참여 자제 등 내부 징계토록 권고.
- 지자체 담당자 : 자체 징계 요청

마. 참고사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1항, 별표 4]

-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4호[1차위반: 1년, 2차이상위반: 2년]
-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4호[1차위반: 경고, 2차위반: 1년, 3차이상위반: 2년]
-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5호[1차위반: 경고, 2차위반: 1년, 3차이상위반: 2년]
- 위반행위 내용으로 보아 경미할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의 1/2범위에서 경감할수 있음

## ■ 사업시행자 및 조사기관 의견(2012. 7.)

### (1) 부여 쌍북리 154-10번지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 ○ 조사기관(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2. 6. 21, 약보고서)

- 사비백제기 동안 최소 5차례에 걸쳐 이용된 생활면이 중첩되어 확인되었음.
- 허가받은 발굴조사 기간과 비용의 한계 때문에 발굴조사 전체 범위에 대하여 5개 생활면 모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각 단계의 생활면을 부분적으로 노출시켜 잔존유구와 점유 성격의 대강은 파악할 수 있음.
- 최후 생활면이 현 지표하 4.5m 이하에서부터 노출되고, 신축 주택이 지하구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된 지면에 모래 등으로 복토작업 후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 (2) 충남도청신도시 연결도로 확장구간내 유적

#### ○ 사업시행자(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2012. 7. 12.)

-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 지역에 대한 지장물 미처리 등으로 발굴조사가 중지(2011. 12. 29.)하였으며, 인사발령에 의한 담당 공무원 변경(2012. 1. 16.)
- 지장물 처리 후 발굴조사 착수(2012. 4. 12.) 전 조사기관에 발굴조사 실시와 관련한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한지 문의하였으나 조사기관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회신
-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지로 행정절차 미이행이 발생.

#### ○ 조사기관(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2. 7. 10.)

- 시굴조사 완료 후 변경허가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하였으며, 발굴조사 재개 통보를 받은 후 행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판단하여 발굴조사 착수.
- 유적 현지조사 등 처리과정에서 행정절차 미이행 사실 확인하였으며, 관련 기관과 협의된 것으로 보고받은 후 현장조사를 진행함.

## ■ 검토 의견

### (1) 부여 쌍북리 154-10번지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 동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현지조사에서도 확인되듯이 상층 유구 분포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하강조사를 실시한 상태로써 조사가 완료된 것은 아님.

### (2) 충남도청신도시 연결도로 확장구간내 유적

- 동 유적에 대한 허가사항은 시굴조사(현장조사 7일)에 관한 사항이며, 정밀발굴조사에 대하여 허가한 바 없음.
- 발굴허가 신청 주체는 사업시행자이므로 행정절차 미이행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나 조사기관은 신규 허가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시작 시 반드시 착수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관련 행정절차가 누락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

(3) 검토의견

-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에서 실시한 동 유적 발굴조사는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및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조치와 별도로 허가를 받는 주체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관련 조치 촉구 예정.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검토위원대로 조치
- 찬성 10명 / 출석 10명

### 3.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발굴(시굴)조사 결과 재검토

#### 가. 제안사항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전북 전주시 소재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발굴(시굴)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전문가 회의 및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사업부지에 대한 표본조사(2회), 시굴조사 및 전문가 검토회의를 실시함.
- 전문가검토회의(2012. 7. 18.) 결과, 표본조사 실시기관의 잦은 조사면적 변경 및 부적절한 산출근거에 대해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조사기관과 조사면적에 대한 조치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2012. 7. 27.)결과, “소위원회 구성하여 검토한 후 재검토”토록 보류된 사항임.

#### 다. 발굴(시굴) 허가내용

- (1) 신청인 : 전주시장
- (2) 발굴장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팔복동 일원
- (3) 발굴기관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 조사 단장 : 김종문(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김규정(연구원 실장)
- (4) 발굴기간 : 2012. 6. 4.~2012. 7. 2.
- (5) 조사결과 : 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 생활유구 및 저습지 등 확인

#### 라. 추진경과

구 분	지표조사	표본조사(1 차)	표본조사(2차)	시굴조사
기 관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전북문화재연구원
기 간	2011. 6. 1.~6. 20.	2012. 1.31.~2. 24.	2012. 3. 29.~4. 20.	2012. 6. 4.~7. 2.
면 적	283,698㎡	283,698㎡	266,032㎡	148,000㎡
결 과	유적없음 - 단, 일부지역 표본조사 실시(50,000㎡)	- 청동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 생활유구 및 경작유구 등 확인 - 발굴면적 : 266,032㎡	- 청동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 생활유구 및 경작유구 등 확인 - 발굴면적 : 148,000㎡	- 청동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 생활유구 및 경작유구 등 확인 - 발굴면적 : 43,500㎡
조치사항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발굴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조사를 실시 정확한 조사결과 보완('12.2.24)	표본조사 결과 확인된 유구 분포지역 발굴조사 실시. 단, 필요시 추가시굴추진('12.5.15)	

\* 일부 사업이 시급한 지역은 기 발굴완료 조치(전라문화유산연구원/14,000㎡)

마. 전문가 검토회의(2012. 7. 18. / ○○○, ○○○, ○○○)

○ 회의결과

- 청동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에 걸치는 유적으로 주거지와 수혈 등의 생활유구, 목기 및 구가 확인되는 저습지가 존재한 충적지대임.
- 시굴트렌치에서 확인된 흔적을 중심으로 조사면적을 확대할 것.
- 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 이어 전북문화재연구원의 조사로 상호 견해 차이가 있어 실조사기관은 복수 기관 이상이 참여토록 할 것.
- 표본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조사면적의 잦은 변경 및 산출근거의 부적절한 부분은 문화재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바.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회의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당초 지표조사 및 표본조사(2차) 결과 발굴 대상 면적의 부실한 산출로 인해 행정처리 지연과 매장문화재 조사업무의 신뢰도를 저하하고 민원 등을 유발한 조사기관(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제한 등의 행정조치.

사. 소위원회 결과(2012. 8. 9. / ○○○, ○○○, ○○○, ○○○, ○○○, ○○○)

○ 회의결과 : 재검토

※ 사실관계 확인자료(2012. 8. 21.) : 별도 첨부

○ 참석자

- 사업시행자(전주시 녹색산업산단과장 등) 및 조사기관(전라문화유산연구원장 등)

아. 참고사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1항, 별표 4]

-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4호[1차위반: 1년, 2차이상위반: 2년]
-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4호[1차위반: 경고, 2차위반: 1년, 3차이상위반: 2년]
-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5조 제1항제5호[1차위반: 경고, 2차위반: 1년, 3차이상위반: 2년]
- 위반행위 내용으로 보아 경미할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의 1/2범위에서 경감할수 있음

자. 의결사항

○ 보류

- 발굴조사 면적은 현지조사 후 확정토록함.

○ 찬성 10명 / 출석 10명

#### 4. 울산 울주군 대대리 144-4·5번지 공장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 결과 검토

#####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대리 144-4·5번지 공장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유적의 보존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조선시대의 유구 및 저습지 등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보존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다. 사업개요

- (1) 사업면적 : 2,460m<sup>2</sup>
- (2)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대리 144-4·5번지 일원
- (3) 사업내용 : 공장신축
- (4) 사업시행자 : 선경산업

##### 라.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선경산업
- (2)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대리 144-4·5번지 일원
- (3) 면적 및 조사유형 : 2,460m<sup>2</sup> / 발굴조사(국비지원 소규모)
- (4) 조사기관 :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 조사 단장 : 박종섭(동 재단 조사연구실장)
  - 책임조사원 : 박강민(동 재단 소규모발굴조사1팀장)
- (4) 조사기간 : 2012. 3. 26.~2012. 8. 10. (현장조사일수 60일)
- (5) 조사 결과
  - 삼국시대 고상식건물지 4동, 주혈군 I·II(약 344개), 수혈군(15개), 저습지, 조선시대 수레바퀴흔 1개소, 구상유구 1기, 적석유구 1기, 수혈유구 2기 등 확인.

##### 마. 전문가 검토회의(2012. 8. 1. / ○○○, ○○○, ○○○)

- 사업부지내에서 저습지 등 주요유적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으나, 우선 매트공법 등의 시행으로 현재 상황을 보존한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바. 참고사항**

-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대리 일대 유적에 대한 보존계획이 수립됨.(개발검토구역, 보존검토구역, 보존구역)
  - 본 사업지역은 보존검토구역에 해당됨.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대로 조치.
- 찬성 10명 / 출석 10명

### Ⅲ. 보고사항

#### 1. 울산 우정혁신도시 개발사업부지 내 제방유구 보존방안 보고

##### 가. 보고사항

울산 우정혁신도시 개발사업부지 내 제방유구 보존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 나. 보고사유

- 울산 우정혁신도시 개발사업 2구역 1차 C2-나, -마 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제방유구에 대한 보존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내용이 있어 보고함.

##### 다. 발굴조사개요

###### □ C2-나 구간

- (1) 신청인 :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 (2) 발굴장소 및 면적 :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581번지 일원 / 29,975m<sup>2</sup>
- (3) 발굴기관 : (재)우리문화재연구원
  - 조사 단장 : 곽종철(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권석호(동 연구원 조사과장) 등
- (4) 발굴기간 : 2010. 4. 12.~2010. 6. 3. (실조사일수 : 190일)
- (5) 조사결과 : 통일시대 추정 제방유구, 근대 토광묘, 근대 옹관묘 등

###### □ C2-마 구간

- (1) 신청인 :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 (2) 발굴장소 및 면적 :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478번지 일원 / 47,374m<sup>2</sup>
- (3) 발굴기관 : (재)한겨레문화재연구원
  - 조사 단장 : 곽동철(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이현석(동 연구원 조사연구실장)
- (4) 발굴기간 : 2009. 9. 15.~2010. 5. 12. (실조사일수 : 170일)
- (5) 조사결과 : 판축시설물, 청동기시대 주거지, 삼국시대 석실묘 등

## 라. 추진 경과

- 2010.03.31. : C2-나 구간 지도위원회의 결과, 제방유구는 보존하고 나머지 근대 토광묘 등은 조사 완료 후 공사진행해도 무방함.
- 2010.05.07. : C2-마 구간 지도위원회의 결과, 제방유구는 보존하고 나머지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은 조사 완료 후 공사진행해도 무방함.
- 2010.06.10. : 사업시행자(LH)가 3D 등 학술자료 남기고 사업추진 요청함.
- 2010.06.25. : 문화재위원회 제6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 저수지 관련 제방유구는 원상보존토록하며, 사적지정을 권고함.
- 2010.08.23. : 사업시행자(LH)가 제방유구 보존방안(3안) 제시 및 사적지정권고 재고 요청함
- 2010.08.27. : 문화재위원회 제8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 문화재지정 가치가 있으므로 지정여부 및 보존방안을 사적분과에서 검토토록 함.
- 2011.03.18. : 사적분과에 제방유구 관련 문화재 지정검토 요청함.  
(울산광역시중구청→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2011.04.11. : 문화재 지정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 발굴조사 결과보고서 및 탄소연대측정결과 산출 지연 등으로 지정검토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유적이 훼손되지 않는 보존방안 및 보호조치(발굴제도과의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첨부)를 취한 후 지정검토 재요청 바람.
- 2011.08.26. : 문화재위원회 제8차 매장분과위원회
  - 사업시행자 의견대로 하되, 실시계획 수립 시 문화재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 2011.12.06. : 사업시행자(LH) 제방유구복원 및 전시관 설계용역 착수.

## 마. 변경사항

- 전시관 설계면적 증감(1층 240㎡→ 2층 755.89㎡)
  - 당초 기본구상계획상 전시실만 반영되었으나, 실시설계 자문위원회 의견반영에 따라 교육·사무공간 마련(학예실, 교육실 등) 등 전시관 설계면적 증가.
- 제방단면을 전사후 전시로 변경 및 제방단면 정리
  - 원형전시의 경우 우기시 전시관 내부로 우수침투 및 미생물번식이 우려되고, 시간 경과에 따라 토사 입자 결합력 약화로 구조적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방단면을 전사한 후 전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직면과 부엽층, 기저부의 평면적인 내용을 전사하기위해 제방 단면의 정리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접수
- 찬성 10명 / 출석 10명

## 2. 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심사 소위원회(제4차)회의 결과 보고

### 가. 보고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에 의거 문화재조사기관 등록심사 소위원회(제4차)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 나. 보고사유

-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제103호, 문화재청 예규 2011. 9. 1.) 제6조(소위원회 운영) 및 본위원회 2011년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회의(2011. 5. 27.)에 의거 문화재조사기관 등록심사 소위원회(제4차) 회의 결과를 보고함.

### 다. 회의개요

- 회의일자 : 2012. 8. 9.(목)
- 회의장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회의실
- 심의위원 : ○○○, ○○○, ○○○, ○○○, ○○○, ○○○, ○○○(이상 7명)

### 라. 보고 내용

- (1)회의 안건
  - 4건(심의 4건)
- (2)회의 결과
  - <심의사항 4건>

### 마. 의결사항

- 접수
- 찬성 10명 / 출석 10명

순번	심의안건	주요내용	의결사항
1	하남역사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명 : 하남문화재단 역사박물관 (대표 이교범)</li> <li>○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역말로 71-1하남역사박물관</li> <li>○기관유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li> <li>○기관종류 :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li> <li>○인력현황 : 총 5명-조사단장(김세민), 책임조사원(김현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가결</li> <li>- 신설 조직으로 2014. 12.31까지 조건부 등록</li> </ul>
2	(재)한국문화재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명 : (재)한국문화재연구원 (대표 김경호)</li> <li>○소재지 : 울산시 남구 대학로 45, 2층</li> <li>○기관유형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li> <li>○기관종류 :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li> <li>○인력현황 : 총 10명-조사단장(양도영), 책임조사원(유난희 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가결</li> <li>- 신설 기관으로 2014. 12.31까지 조건부 등록</li> </ul>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명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대표 강정극)</li> <li>○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li> <li>○기관유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관련 기관</li> <li>○기관종류 : 수중지표조사기관</li> <li>○인력현황 : 총9명-조사단장(강정극), 책임조사원(김성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가결</li> <li>- 신설 기관으로 2014. 12.31까지 조건부 등록하되 조사원 등급 조정필요</li> </ul>
4	동의대학교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명 : 동의대학교박물관(최연주)</li> <li>○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995</li> <li>○기관유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li> <li>○기관종류 : 육상지표조사기관</li> <li>○인력현황 : 총4명-조사단장(최연주), 책임조사원(조현복)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가결</li> <li>- 신설 기관으로 2014. 12.31까지 조건부 등록하되 미발간 보고서 발간계획의 수행여부 점검</li> </ul>

### 3.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발굴허가 현황 보고

#### 가. 보고사항

지정문화재 및 보호 구역 내 발굴허가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나. 보고사유

- 지정문화재 및 보호 구역내 발굴허가 신청과 관련, 예산조기집행 등 사유로 인하여 발굴허가한 목록을 보고하고자 함

#### 다. 유적목록

문화재명	지정현황	신청사유	조사기관	면적 (㎡)	조사 유형	조사 기간	조사비용 (천원)	허가 일
대견사지 삼층석탑	시도 유형 제42호	사찰 건립	(재)계림문화재연구원	2,476	발굴	42	215,930	7.27
경주 월성	사적 제16호	월성해자 발굴 (16차)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4,114	발굴	150	300,000	8.16

#### 라. 의결사항

- 접수
- 찬성 10명 / 출석 10명